

[일련번호 : 6]

# 양 천 구

## 주 의 요 구

**제 목**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 본인확인란 작성 소홀

**관 련 기 관** 서울특별시 양천구 ○○동

**내 용**

### 1. 업무개요

○○동은 「주민등록법」 및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 2. 관계 규정 및 판단 기준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6조(주민등록증의 발급절차)에 따르면 구청장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증을 발급 신청 시, 관계 공무원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사진이 부착된 것이어야 한다)를 제시하거나 주민등록지의 이장이 확인을 하거나 17세 이상의 동일 세대원,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이 동행하여 확인하는 방법으로 발급대상자 본인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주민등록 사무편람」(행정안전부)에 의하면 관계 공무원은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 본인임을 ①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사진이 첨부된 것에 한한다)를 제시로 신분 확인, ② 주민등록지의 이·통장이 확인(서면 확인서), ③ 17세 이상의 동일 세대원,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가 동행(신분증명서 지참)하여 확인, ④ 발급대상자가 합숙사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합숙사의 관리자 또는 위임을 받은 합숙사의 직원이 동행하여 신분 확인, 위 방법 중 하나로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동은 감사대상 기간 동안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서 상에 발급대상자 본인확인을 한 사항(가족 동행 사항, 증명가능 서류 지참사항 등)에 대하여 작성을 하여야 함에도 이를 작성하지 않았으며, 2023. 1월 이후부터는 담당공무원 확인 도장도 날인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 4. 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 의견

○○동은 위 사항과 관련하여 별도의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 5. 조치할 사항

#### ○○동장은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교육을 실시하기 바라며,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관리·감독하시기 바랍니다. (주의)